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
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이상민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이 개정(법률 제19023호, 2022. 11. 15. 공포, 2023. 2. 16. 시행)됨에 따라,

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총정원을 51명에서 53명으로 상향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경찰청 등과 합의되었음

대통령령 제 호

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
규정 일부개정령안

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일부를
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시·도자치경찰위원회(세종특별자치시자치경찰위원회
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”를 “시·도자치경찰위원회”로 한다.

별표 중 총계, 경찰공무원 계 및 총경 이하 “51”을 각각 “53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2년 2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원) ① 「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제2항에 따라 <u>시·도 자치경찰위원회(세종특별자치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제외한다. 이하 같다)</u> 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의 총정원은 별표와 같다. ②·③ (생략)	제2조(정원) ① ----- ----- ----- <u>시·도자치경찰위원회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정원대비표

[별표] 시·도자치경찰위원회의 사무기구에 두는 경찰공무원 총정원표 (제2조제1항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·	·	·	
총계	<u>51</u>	<u>53</u>	+2
경찰공무원 계	<u>51</u>	<u>53</u>	+2
총경 이하	<u>51</u>	<u>53</u>	+2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행정안전부 사회조직과	
연 락 처	(044) 205 - 2365